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27
----------	------

제출년월일 : 2005. 8.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의 위치를 규정 (안 별표1)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나.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신청 시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가능 함 (안 제6조)

다.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안 제8조)

- 1) 사망당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유골을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
- 2)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3) 기 납골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이 합골을 원하는 경우의 화장한 유골

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 (안 제13조 별표2)

- 1) 사용료 : 1기당 200,000원
- 2) 관리비 : 위탁자와 개별계약

마.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안 제14조)

바.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2) 제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납골·산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하여 분쇄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3. “산골시설”이라 함은 분쇄된 유골을 강 또는 산동에 뿌려 영구히 장사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과 같은 장사문화를 장려·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납골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납골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회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시 연고자의 주소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장사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당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유골을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
2. 구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3. 납골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화장한 유골의 합골을 원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납골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납골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제8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월을 경과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의무 및 매장) ①납골시설사용자는 제6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되는 날까지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변경

2. 상속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권의 승계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4. 기타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

제1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당해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및 처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등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수거 및 매장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7.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③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편의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등) ①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기타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각종 대장 및 서류와 기타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 현황(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종로구 추모의 집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재)효원납골공원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사 용 료 금
납골시설	일반주민	- 사 용 료(최초 15년 사용) - 재사용료(5년 연장사용)	200,000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사 용 료(최초 15년 사용) - 재사용료(5년 연장사용)	100,000 5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사 용 료(최초 15년 사용) - 재사용료(5년 연장사용)	100,000 50,000
산골시설	일반주민(영구사용)		10,000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영구사용)		무 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영구사용)		무 료

[별지 제1호 서식]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망장소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분묘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			납골시설() 산골시설()	
서울특별시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사용시설	명 창			
	구 분	납골시설(), 산골시설()		
	소재지			
	번 호		규 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	사망장소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	부 터 까 지			
사용허가조건	뒷면기재	교부사유	신규(), 재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인)				

(뒷면)

허 가 조 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합동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는 재사용 연장허가시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당해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시설은 구조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장사시설 사용자신고서

사용시설	명 칭			
	구 분			
	소재지			
	번 호		규 모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종로구청장 귀하				